

■ 공무원보수규정 [별표 28] <개정 2018. 1. 18.>

승진·전보 시 호봉 확정표 (제11조제2항 관련)

가. 별표 3(일반직 등), 별표 4(공안업무 등), 별표 8(일반직 우정직군) 및 별표 10(경찰·소방 등)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

승진 전 호봉	승진 후 호봉	승진 전 호봉	승진 후 호봉	승진 전 호봉	승진 후 호봉
1	1	12	11	23	22
2	1	13	12	24	23
3	2	14	13	25	24
4	3	15	14	26	25
5	4	16	15	27	26
6	5	17	16	28	27
7	6	18	17	29	28
8	7	19	18	30	29
9	8	20	19	31	30
10	9	21	20	32	31
11	10	22	21		

나. 별표 3의2(전문경력관 등 봉급표)를 적용받고 전보하는 공무원

다군 호봉	나군 호봉	나군 호봉	가군 호봉	다군 호봉	나군 호봉	나군 호봉	가군 호봉	다군 호봉	나군 호봉	나군 호봉	가군 호봉
1	1	1	1	14	9	14	9	27	19	27	19
2	1	2	1	15	10	15	10	28	20	28	20
3	1	3	1	16	10	16	10	29	21	29	21
4	1	4	1	17	11	17	11	30	22	30	22
5	2	5	2	18	12	18	12	31	23	31	23
6	3	6	3	19	12	19	13	32	24	32	24
7	4	7	4	20	13	20	14	33	25	33	25
8	5	8	5	21	14	21	15	34	25	34	25
9	5	9	6	22	15	22	16	35	26	35	26
10	6	10	7	23	16	23	16	36	27	36	27
11	7	11	7	24	17	24	17	37	28	37	28
12	8	12	8	25	17	25	18	38	29	38	29
13	8	13	8	26	18	26	19				

다. 별표 5(연구직)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

연구사 호봉	연구관 호봉	연구사 호봉	연구관 호봉	연구사 호봉	연구관 호봉
1	1	13	9	25	15

2	1	14	9	26	15
3	2	15	10	27	16
4	3	16	10	28	16
5	4	17	11	29	17
6	5	18	11	30	17
7	6	19	12	31	18
8	6	20	12	32	18
9	7	21	13	33	19
10	7	22	13	34	19
11	8	23	14	35	20
12	8	24	14	36	20

라. 별표 6(지도직)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

지도사 호봉	지도관 호봉	지도사 호봉	지도관 호봉	지도사 호봉	지도관 호봉
1	1	13	7	25	14
2	1	14	8	26	14
3	1	15	9	27	15
4	2	16	9	28	15
5	3	17	10	29	16
6	3	18	10	30	16
7	4	19	11	31	17
8	5	20	11	32	17
9	5	21	12	33	18
10	6	22	12	34	18
11	6	23	13	35	19
12	7	24	13	36	19

비고

1. 승진 후 해당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승진 후 계급의 최고 호봉으로 한다.
2. 제1호에 따라 호봉이 확정된 공무원이 승진 전 계급으로 강임되는 경우에는 강임되는 계급의 호봉에 1호봉을 가산하여 호봉을 확정한다.
3. 별표 3의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이 전보된 직위군에서 동일호봉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전보 후 직위군에서 호봉을 확정된 후 다음과 같이 잔여기간을 적용한다.

가. 다군 1호봉부터 4호봉까지 또는 나군 1호봉부터 4호봉까지

- 1) 1호봉: 전보 전 잔여기간의 4분의 1
 - 2) 2호봉: 전보 전 잔여기간의 4분의 1에 3개월 가산
 - 3) 3호봉: 전보 전 잔여기간의 4분의 1에 6개월 가산
 - 4) 4호봉: 전보 전 잔여기간의 4분의 1에 9개월 가산
- 나. 다군 8호봉·12호봉·15호봉·18호봉·24호봉·33호봉 또는 나군 10호봉·12호봉·15호봉·22호봉·26호봉·33호봉: 전보 전 잔여기간의 2분의 1
- 다. 다군 9호봉·13호봉·16호봉·19호봉·25호봉·34호봉 또는 나군 11호봉·13호봉·16호봉·23호봉·27호봉·34호봉: 전보 전 잔여기간의 2분의 1에 6개월 가산
4.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한 후 잔여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다. 다만, 강임 시에 획정된 해당 호봉에서 강임되기 전의 계급으로 승진하는 공무원의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가.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8호봉, 10호봉, 12호봉, 14호봉, 16호봉, 18호봉, 20호봉, 22호봉, 24호봉, 26호봉, 28호봉, 30호봉, 32호봉, 34호봉 및 36호봉
- 나.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3호봉, 6호봉, 9호봉, 11호봉, 13호봉, 16호봉, 18호봉, 20호봉, 22호봉, 24호봉, 26호봉, 28호봉, 30호봉, 32호봉, 34호봉 및 36호봉